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61

발의연월일: 2021. 4. 8.

발 의 자: 박형수 · 이종성 · 김희국

김영식 · 조수진 · 김형동

윤두현 • 윤주경 • 서일준

김승수 · 이명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%를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,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였을 때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경우 10%만 가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음.

하지만 현금영수증의 자진 신고 또는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10% 경감기간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보다 더길게 연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에 대한 10% 경감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5

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현금영수증에 대한 성실신고를 독려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9제2항제3호)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1조의9제2항제3호 중 "7일"을 "15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1조의9(신용카드 및 현금영수	제81조의9(신용카드 및 현금영수
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) ① (생	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	2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	
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	
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	
여 납부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	3
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	
한 경우(「국민건강보험법」	
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	
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경우는 제외한다): 미발급금	
액의 100분의 20(착오나 누락	
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	
날부터 <u>7일</u> 이내에 관할 세무	<u>15일</u>
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	
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	
100분의 10으로 한다)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